법무법인 한누리

위 임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 리 (www.hnr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nr@hnrlaw.co.kr)

※ 위임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추후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고, 괄호에 (O)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음 ( )**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본인계좌**

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1심, 2심 및 3심)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민사조정신청 포함), 보전처분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 및 판결금(화해금, 조정금 포함)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2.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감리 관련 의견제시, 민원의 제기 등
3.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2019. . .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2. 거래내역서(2017. 11. 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표시된 것일 것, 잔고수량의 표시가 없다면 잔고증명서 별도 첨부)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사건
당 사 자		상 대 방	코오롱티슈진 및 동 회사 이사들 등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하며 1심부터 3심까지로 한다 (구체적인 소송의 방식과 시기, 보전처분 및 상소의 여부 등은 갑의 이익을 고려한 을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다).

제3조【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안 1심 소송비용과 착수보수로 투자손실액의 1.0% (착수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투자손실액은 취득가격에서 처분가격을 뺀 나머지로 하되 이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하여는 그 처분가격을 '8,010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이 금액은 먼저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심판결 후 소요된 비용과 정산하여 나머지를 착수금으로 보기로 한다. 단, 위 투자손실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갑은 을에게 본안 1심 소송비용과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이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포함)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금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부터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0%

② 2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3%

③ 3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성과보수의 지급방식

① 갑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② 을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급받은 금원 중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7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라.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 중 제1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제6조에서 의한 금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항소심 등을 위한 인지대 등은 갑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

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사건 처리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중요사항의 결정】 을은 합의안, 화해안, 조정안의 수락여부,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 화해, 합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갑과 동종의 처지에 속한 피해자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갑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7조【정보제공동의】 갑은 을에게 제1조(목적)와 제2조 (위임한계)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18조【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 . .

갑 : 위임인 (인)

을 :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 주 영, 서 정

법무법인 Hannuri Law 한누리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원 제출 서류의 필수기재사항 및 사건진행경과(결과)보고, 승소금 수령 필요사항
■ 청구서 발송,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필요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법인의 경우, 법인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목적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수행 필요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대한민국 법원, 검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현금영수증발행 번호(휴대폰번호)	

동의인 성명 **(인,서명)**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